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성기 의원)

의안 번호	412
----------	-----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일

발 의 자 김성기 의원

찬 성 자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불일치 부분을 수정하며,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범위를 확대·명확히 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축제에 대한 평가 등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 가. 적용 대상 축제(안 제3조관련)
- 나. 군수의 책무로서 축제의 지원시책 마련 노력(안 제4조관련)
- 다. 축제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등 위원회 관련사항(안 제5조~9조관련)
- 라. 축제 운영 경비의 지원 근거(안 제10조관련)
- 마. 축제에 대한 평가(안 제11조관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03. 24. ~ 03. 26.(기획예산과-4835), 아래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집행부 의견(관광정책과)	검토결과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평창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p> <p>제10조(축제의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u>지방보조금</u>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해당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u>개최 3주</u>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u>군수</u>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원을 받은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 축제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p> <p>④ <u>군수</u>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축제”란 평창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p> <p><u>2.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추진·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말한다.</u></p> <p>제10조(축제의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u>전부 또는 일부</u> 지원할 수 있다.</p> <p>②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해당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u>개최 5주</u>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1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u>축제 추진주체는</u>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원을 받은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 축제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p> <p>④ <u>축제 추진 주체는</u>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사유 : 평창군이 직접 축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평가를 받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축제위원회 등)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p>	<p>(수용)</p>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란 평창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2.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추진·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제4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평창군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통·폐합 및 발굴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1. 문화·관광관련 단체 관계자
2. 국내 축제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평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안전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축제담당팀

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축제의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해당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최 5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원을 받은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 축제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 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군수가 외부 기관 등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축제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성 등

2.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운영·행사진행 전반 등

3. 투명한 예산 집행,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4.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광객 만족도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

④ 축제 추진주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평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10조(축제의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②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해당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최 5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김성기의원
연락처	(033) 330 -2501